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원활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6. 직원의 배치기준)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경우 및”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6호 표의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란 중 “2.5명당”을 “2.3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복지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현행	개정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생략)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u>경우 및</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u>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

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요양 보호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요양 보호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